장학규정 5-2-1

규정번호 5-2-1
제정일자 1977.3.1
최근개정 2020.2.17
개정차수 33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우리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가 및 교외 장학금은 해당 장학 기관의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.(개정 2016. 9. 2)

제2장 장 학 금

제3조(종류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, 교외장학금, 국가장학금으로 구분한다.(개정 2016. 9. 2)

② 교내장학금 세부 선발기준은 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.(개정 2016. 9. 2, 2017.02.27., 2017.10.25., 2018.08.27.) (표 삭제 2018.08.27.)

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연한 장학금으로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,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.(개정 2016. 9. 2)

④ 국가장학금은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(2016. 9. 2)

제3장 장학생의 선정

제4조(선정대상 및 기준)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하며,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의 세부내용은 우리대학 장학금 운영지침에 의한다.(개정 2016. 9. 2)

제5조(선정시기) 장학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선정하되, 장학 종류에 따라 학기 중에도 선정할 수 있다.(개정 2016. 9. 2., 2018.08.27)

제6조(교외장학생의 선정) 교외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(조변경 2016. 9. 2)

1. 교외장학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.
2. 해당학과 및 인원지정이 없을 때에는 교외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지원처장이

배정하고 학과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.

3. 교외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4.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교비에 입금시킨 후 지급토록 한다.

제4장 장학위원회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우리대학의 장학정책,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조변경 2016. 9. 2)

②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·기획실장·교무처장·산학협력처장·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12.03., 2018.08.27., 2018.12.10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6. 9. 2)

1.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3.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장학금 운영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5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

제9조(신청기간 및 방법) ①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서장 또는 학과장 추천으로 신청하고, 면학장학, 한가족장학, 어학우수장학은 수혜대상자 본인이 직접 학생복지팀에 신청한다.(개정 2016. 9. 2, 2017.02.27., 2018.08.27.)

② 장학금은 해당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10조(수혜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한다.(개정 2016. 9. 2)

1. 휴학생(단,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)
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근로장학생
4.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원질서를 저해하는 자

제11조(수혜기간의 제한)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1년제 학과는 2학기, 2년제 학과는 4학기, 3년제 학과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20.02.17.)

② (개정 2016. 9. 2), (삭제 2017.10.25.)

제12조(지급시기) 교내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초로 한다.

제13조(지급방법) ①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 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, 등록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학비감면이나 현금지급 후 성적이의신청으로 인한 장학생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.(개정 2016. 9. 2)

② 장학금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, 국가장학금,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하되, 후순위 장학금 중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의 경우 우선 또는 최소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(항신설 2016. 9. 2, 개정 2020.02.17.)

제14조(지급중지 및 회수) ①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회수한다.(개정 2016. 9. 2)

1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
2. <호 삭제 2020.02.17.>
3. 휴학생(단,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)(개정 2020.02.17.)
4. 제적된 때
5. 학기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(개정 2020.02.17.)
6.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장학대상자 중 활동내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(개정 2020.02.17.)
7. 기타 장학금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(신설 2020.02.17.)

② 장학금 회수 금액의 산정은 우리대학 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16. 9. 2, 개정 2020.02.17.)

제15조(평가 및 환류)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석·평가하여 이를 차기년도 장학운영에 반영한다.(신설 2016. 9. 2)

제16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68> <생략>

<69>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5조①, 제6조②, 제7조, 제8조1호·2호, 제9조②, 제12조1호, 제17조, 별표1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70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0> <생략>

<21>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, 9조, 11조, 별표1의 “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”을 “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”으로 하고, “교학부장”을 “대외협력처장”으로 한다.

<22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03. 부칙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및 장학생 선정시기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